대구가톨릭대학교
DAEGU CATHOLIC UNIVERSITY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2차 모집 공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앵커바이오의약연구사업단에서 앵커사업(경북 혁신형 천연물 신약 바이오 산업 특화 R&D)의 일환으로 수행하는『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2차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대구가톨릭대학교 앵커바이오의약연구사업단장

1 지원 개요

1 사업 목적 및 분야

○ 목적 : 대학의 보유 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지역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위한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 분야 : AI・바이오 전 분야

2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가 경북 지역에 소재한 기업

○ 대학 : 보유 기술・특허의 이전 등을 통해 산학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소속 교원(비전임교원 포함)

3 모집 공고 및 신청 기간

○ 공고 기간 : 2026. 9. 9.(수) ~ 9. 21.(월)

○ 신청 기간 : 2026. 9. 9.(수) ~ 9. 21.(월)

4 지원 과제 수행 기간

○ 2026. 10. 1.(목) ~ 2026. 12. 31.(목) (3개월)

5 지원 규모

○ 총 사업 예산 :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차등 지원

○ 과제당 지원금(상한) : 최대 2,000만원

○ 선정 규모 : 3개 과제 내외

※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이며, 환급·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집행 금액에서 제외함

6 칠곡군 소재 기업 우대

○ 칠곡군 소재 기업이 선정될 경우, 국비 지원금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칠곡군 지방비로 추가 매칭 지원함(칠곡군 예산 2,000만원 한도 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음)

- 예시 : 2,000만원 과제 선정 시 칠곡군에서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별도 과제 유형으로 운영하지 아니하며, 칠곡군 소재 기업이 참여하는 선정 과제에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2 지원 내용 및 의무 성과

1 지원 내용

구분	목적 및 지원 내용	지원금(상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대학(참여교원)-기업 1:1 컨소시엄형 신규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2,000만원

2 의무 성과

○ 특허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1건 : 과제 수행 기간 내(2026. 12. 31.까지) 이행

○ 기술이전 1건 : 대학·산학협력단 명의 또는 공동 보유 특허 또는 기술의 이전, 2027. 1. 15.까지 이행

※ 부득이한 경우 의무 성과의 이행 시점 및 형태(특허 출원, 기술이전,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등)는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음

○ 이행 기준

- 의무 성과의 이행은 기한 내에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기술이전은 타지역・타기업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과로 인정함
- 기술료(특허 양도・실시 대가 등)는 참여기업이 자기 자금으로 부담함

※ 성과 증빙 : 특허・지식재산권은 출원번호 (접수증), 기술이전은 기술이전(양도・실시) 계약서로 함

※ 기술이전 성과 인정 요건 : 이전 대상 기술이 대학・산학협력단 단독 명의이거나 공동 보유 기술이어야 하며(공동 보유 시 대학 지분 전부 이전),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양도・실시권 계약이어야 함(기술자문・공동연구・인력교류 제외, 유상・무상 모두 계약서 필수)

※ 사사문구는 추후 안내 예정이며, 반드시 사업단에 문의 후 표기하여야 함

3 지원 분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1 지원 분야

○ AI・바이오 전 분야의 기술개발, 제품화 지원

2 지원 사항

○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준함

항목	사용용도
가. 인건비	1) 대학 소속교원에게는 국고에서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미지급 인건비 또는 현물 계상). 국고 현금 인건비는 과제 수행을 위해 새로 채용한 연구원에 한해 지급함 2) 기업(영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국고가 아닌 대응자금(현금·현물)으로만 집행함
나. 학생인건비	대학 등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대학원생·학부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 연구재료비	시약·재료 등 소모성 경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자산성 기자재 구입 제외)
라.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특허 출원 관납료·변리사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출장비(대학 자체규정 및 세부기준 준용), 논문 게재·투고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그 밖에 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비용

항목	사용용도
마.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인건비 총액의 20% 이내에서 계상

4 참여 및 운영 기준

1 기본 원칙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BD)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목적으로 함

○ 앵커사업 사업비를 활용한 과제로, 사업단의 자체 기획 및 선정 기준을 기반으로 수행함

2 연구진 구성 기준

○ 참여 주체 : 대학(교원·학생), 기업(부설연구소 포함), 기타 협력기관

○ 필수 조건

-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1인 이상
-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이 전체 연구진(학생 제외)의 20% 이상
- 대학원생 및 학부생 참여 장려
- 대학의 역할은 단순 참여가 아닌 실질적 기여 내용으로 명확히 기재

3 참여 제한

○ 교수 : 1인당 최대 3과제까지 지원 가능 (2026년 1차 공모 선정 과제를 포함하여 합산 적용)

- 다만, 평가 시 전문성에 기반한 다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다과제 신청은 평가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기업 : 1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

- 다만, 2026년 1차 공모 공동기술개발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며, 기술이전형 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신청할 수 있음

4 기업 대응 자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참여기업은 산업체 대응자금을 부담하며, 실질적 기업 기여를 위해 현금 대응자금은 총 사업비의 10~30% 수준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함

○ 아울러 법령상 의무 매칭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칠곡군 지방비 매칭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지방비) 규모에만 영향을 미치며, 대응자금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대응자금은 국비 기준으로 산정)

○ 운영 방안

- 대응자금(현금・현물)은 대학으로 이체하지 아니하며,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집행함
- 집행 증빙(현금 : 계좌이체 내역・세금계산서 등, 현물 : 인건비 산정내역・사용내역 등)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 국비와 대응자금의 집행내역은 각각 구분하여 처리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기준

-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5 성과관리 및 지식재산권

○ 도출된 지식재산권 등 성과물의 소유는 관련 기관 간 협약에 따르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자 또는 공동소유로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출원 시 대학 공동명의를 권장함(기술이전 성과 인정 및 후속 기술이전 연계를 위함)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원칙적으로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로 부담하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함

○ 기술이전 시 기술료는 학교(산학협력단)에 귀속함

○ 성과 보고 : 최종 결과보고서 및 성과 증빙자료를 2026. 12. 31.까지 제출함(별도 양식 배포). 기술이전 증빙은 2027. 1. 15.까지 별도 제출함

○ 연구 노트 : 과제 수행 중 작성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함

6 제재 및 환수

○ 결과보고서 미제출·지연, 의무 성과 미이행, 과제 수행 불성실 등의 경우 사업단은 단계적으로 제재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1단계 : 시정 요구 및 경고
- 2단계 : 사업비 집행 중지 및 협약 해지
- 3단계 : 기 지급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법정이자 포함)
- 4단계 : 다음 연도 및 향후 사업 참여제한

○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부정하게 사용·수급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앵커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등에 따라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5 평가 기준

1 선정 절차

사전 서류검토 → **선정 평가 (서면 평가)** → **선정 과제 확정** → **선정 결과 통보**

※ 전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사전 서류 검토	• 지원 서류 제출 여부 확인 • 참여 제한 및 신청기업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
선정 평가	• 평가위원회 개최 • 신청서류를 토대로 수행 계획 및 적합성 검토
선정 과제 확정	•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확정
선정 결과 통보	• (필요시) 기업 방문 • 지원 여부 심의 결과 통보

3 사전 서류 검토

○ 참여 제한 및 지원 자격 부합성 (경북 지역) 등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 서류 미비 등을 검토함

4 선정 평가 기준

○ 신청 서류를 토대로 과제 수행 계획, 수행 역량 및 지원 적합성을 검토함

○ 산학연 전문가(교내・교외) 4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평가 시 신청 기업・연구팀이 기수행한 사업단 지원 과제의 수행 결과 및 성과 도출 내역을 반영함

5 선정 과제 확정

○ 종합 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0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한 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함

○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소요 예산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확정함

※ 70점 이상인 과제도 총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지원 결격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차순위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수행 계획 충실성	• 과제 목표 명확성 • 과제 추진계획의 구체성	30
수행 과제의 창의성	• 과제 목표의 도전성 •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혁신성	20
수행 능력	•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제품개발 역량 • 대학과 기업의 체계적인 협업・역할 분담 • 사업비 소요예산의 적정성, 기업 대응자금의 비중	30
성과 및 활용 가능성	• 성과 도출 계획의 구체성 • 결과 활용 방안	20
합 계		**100**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추진 절차 및 일정

추진 단계	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	2026. 9. 9. ~ 9. 21.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2026. 9. 22. ~ 9. 30.
선정과제 확정·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2026. 9. 30.
사업수행	2026. 10. 1. ~ 12. 31.
연구개발비 집행 마감	2026. 12. 15.
결과보고서 제출	2026. 12. 31
의무 성과 최종 이행(증빙 제출)	2027. 1. 15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 신청 방법 : 신청 서식(별도 배포)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rise4331@cu.ac.kr)로 제출

○ 문의처

담당	연락처
대구가톨릭대학교 앵커바이오의약연구사업단	전화 : 053-859-4332~3 이메일 : rise4331@cu.ac.kr

○ 제출 서류

No	제출 서류	제출 부수	제출시점
1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	신청 시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각 1부	신청 시
3	청렴 · 성실 의무이행 서약서	1부	신청 시
4	지원자격 자기진단 및 서약서	1부	신청 시
5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023년~2025년)	1부	협약 시
6	4대 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2026. 10. 1. 기준)	1부	협약 시
7	국세 · 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협약 시
8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각 1부	협약 시

※ 지원 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 검증을 위해 평가위원회가 필요시 신청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지원금 일체 반납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사업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향후 5년간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9 지원제외

1. 과제 신청서 등 신청·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2) 동일 과제에 대해 타기관에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4대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참여기업 및 대학의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7)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순 유통업·숙박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8) 기타 사업단에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기타

○ 연구개발비 집행 시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지출 방법은 「앵커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을 준용함

○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연구개발비 집행 증빙 서류** - 지출 등 결의서 : 지출결의서, 수입결의서 - 지급 증빙서류 : 카드 매출 전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기타 지급 증빙 서류 : 계약서, 청구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검수조서 등

○ 과제 수행 종료 후 사업단은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고, 앵커사업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시 과제 정산내역을 제출함

○ 중복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하여 기 수행 과제 및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반드시 검토함

○ 계획 변경 : 기업, 연구책임자, 수행기간, 과제 목표 등 변경 시 사업단의 심의·승인을 받아야 함

○ 중단 또는 환수 사유 : 연구부정, 참여제한 확정, 수행 불가 상황, 성과 조기 달성 등

○ 본 과제에는 간접비를 편성하지 아니함